

인천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가단21363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홍성용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이예나

변 론 종 결 2021. 6. 3.

판 결 선 고 2021. 7. 8.

주 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8. 6. 16. 체결한 부담부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 6. 19. 접수 제2286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2018. 6. 16.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부담부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 6. 19. 접수 제2286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3. 7. 3. C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C에게 5,000만 원을, 2018. 3. 9. C이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C에게 5,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처분행위

(1) C은 2018. 6. 19. 배우자인 피고에게 C이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6. 16. 부담부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286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4억 5,000만 원에 달하고, 위 부동산에는 C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채권최고액을 2억 2,620만 원 및 7,54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에서 위 대출금 채무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다만, 대출명의자는 그대로 C로 두었다).

(2) 피고와 C은 1996. 6.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8. 6. 12. 인천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같은 해 9. 13.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고, 같은 해 10. 10.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이 법원의 E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C이 이자 연체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야기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은 무자력이 아니었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C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받은 것으로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위 증여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C에 대하여 위 합계 1억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은 신용보증기금 내지는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대위변제받은 다음날인 2019. 6. 20. 내지는 같은 해 9. 25.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 이전인 2013. 7. 3. 및 2018. 3. 9. 성립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1) 이 사건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와 C이 1996. 6.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8. 10. 10. 협의이혼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C이 그 무렵인 2018. 6. 16. 피고에게 함께 거주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현재까지 피고와 그 자녀들이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나) 재산분할대상

1)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고(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파탄 이전의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에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상대방도 용인하였던 채무는 결국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판결 참조). 또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에도 그 기준일에 관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증여 당시 C의 재산 내역과 위 일자 무렵 재산분할대상은 다음 표 기재와 같고, 순 재산 합계는 395,669,280원이다.

소유자	구분	재산	가액(원)
C	적극재산	이 사건 부동산	450,000,000
		원고에 대한 예금채권 (계좌번호 1 생략)	33,879,469
		원고에 대한 예금채권 (계좌번호 2 생략)	1,200,312
		부천 소사구 F 중 G매장 칸 부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0,000,000
		부천 H빌딩 5층 일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0,000,000
		부천 원미구 I 1층 동쪽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0,000,000
	소극재산	D 차용금 채무	92,883,000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100,000,000
	순 재산(적극재산 - 소극재산)		362,196,781
B	적극재산	전남 구례군 J, K, L, M 중 1/3 지분	4,000,000
		기업은행 예금채권	19,215,529
		N은행 예금채권	256,970
		부천 소사구 F 중 O식당 칸 부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0,000,000
	순 재산		33,472,499

① C 및 피고는 혼인기간 중 적극재산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C과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C은 G매장을 운영하고, 피고는 같은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부부공동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상당한 협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C은 혼인기간 중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㉔ C의 적극재산에 관한 피고의 주장 중 배척하는 부분

㉔ 부천시 소사구 F에 대한 권리금 3,500만 원, 부천시 원미구 I, 1층 동쪽에 대한 권리금 5,000만 원, 부천시 원미구 P빌딩 Q호에 대한 권리금 240만 원 : C이 협의이혼 신고 당시 위 권리금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㉔ 부천시 원미구 R건물 S호에 관한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 을 제3호증의 6, 을 제9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를 제3자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C이 협의이혼 신고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㉔ 부천시 T빌딩 U호에 대한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 을 제3호증의 9의 기재만으로는 C이 협의이혼 신고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㉔ 시흥시 V건물 W호에 관한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 을 제3호증의 10의 기재만으로는 C이 협의이혼 신고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㉔ 부천시 원미구 P빌딩 Q호에 대한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임대차보증금은 C이, 인테리어비용 등은 X이 각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은 C과 X의 동업재산에 해당하므로, C이 협의이혼 신고 당시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㉔ Y, Z, AA, AB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 을 제3호증의 11, 12, 13, 을 제14호증의 1, 4, 5, 6,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채권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만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㉔ A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을 제14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C가 2016.

6. 16. 인천지방법원 AD로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C에 대한 10,388,085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율은 56%, 변제기간을 60개월로 하여 변제계획이 인가된 바, 위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상 변제예정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액은 자연채무로서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위 변제계획인가결정상의 변제예정금액과 실제 변제 여부 등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 주식회사 AE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을 제14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위 채권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만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중국 천진시 소재 백화점의 AF 사업 등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권, 시설자금 등의 채권 :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재산분할비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와 C은 1996. 6. 28. 혼인하여 자녀 AG(AH 생), AI(AJ 생)을 두고 약 22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미성년 자녀 1명이 있는 상태에서 2018. 10. 10. 협의이혼에 이른 점, C은 피고와 사이에 AI이 성년에 이르기 전일까지 매월 20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하는 협의를 한 점, C과 피고는 각자 사업을 영위하면서 경제활동을 한 점, 분할대상 재산 중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하는 등으로 특유재산이라고 볼 만한 것은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고와 C은 혼인기간 중 이룩한 공동재산 중 각 1/2 상당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재산분할의 상당성 여부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C의 분할 대상 순재산은 395,669,280원이고, C은 순 재산으로 362,196,781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164,362,141원(= 395,669,280원 × 1/2 - 33,472,499원)을 재산분할하여 주어야 하는데, C은 피고에게 그 유일한 부동산인 450,0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고와 협의이혼 당시 피고는 C로부터 미성년 자녀(AJ생)의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일까지 약 39개월 동안 월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협의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92,883,000원인 점과 피고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하여 부담해 온 점 등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 중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C은 이 사건 증여 당시 그 소유인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피고에게 이전하였고, C은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재산분할약정의 체결시기와 그 내용, 피고의 C의 관계, 피고가 C과 함께 C이 운영하는 G매장이 위치한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협의이혼 후로도 2019. 7. 11.까지 위 식당을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중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다선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1등의 건물의 표시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20층 공동주택

지하1층 51.02㎡

1층 430.56㎡

2층 426.9㎡

3층 426.9㎡

4층 426.9㎡

5층 420.94㎡

6층 420.94㎡

7층 420.94㎡

8층 420.94㎡

9층 420.94㎡

10층 420.94㎡

11층 420.94㎡

12층 420.94㎡

13층 420.94㎡

14층 420.94㎡

15층 420.94㎡

16층 420.94㎡

17층 420.94㎡

18층 420.94㎡

19층 210.47㎡

20층 210.4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소재지번 : 1. 인천광역시 부평구 대 70926.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84.07㎡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70926.2분의 52.3176 끝.

